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규제자유특구 특례 실효성 제고, 성과 및 사후관리 수단 강화 등 제도 효율화
-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위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특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그간 규제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부가조건을 요구해 실증 진행이 다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부처에서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특구법」을 보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해당 ‘규제자유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관리,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셋째,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에 대해 양도하거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희완 (044-204-7190)
		담당자	서기관	백진욱 (044-204-7191)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	책임자	과 장	추경훈 (044-204-7590)
		담당자	사무관	장좌영 (044-204-7591)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지원과	책임자	과 장	유환철 (044-204-7220)
		담당자	사무관	안예리 (044-204-7232)

붙임 1

「지역특구법」 개정 주요 내용

□ 개정 배경

- 규제자유특구 실효성 확보 및 관리체계 강화,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확대 등을 통해 특구 제도 활성화와 지역 성장 도모

□ 주요 내용

① 규제자유특구

- **(사후관리 제도 보완)**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보고 근거 신설
* (현행) 지정기간 內 → (개정안) 지정기간 內 + 지정종료 後 일정 기간

- **(특례 실효성 확보)** 실증특례·임시허가 조건 부가 시 사업자 부담 최소화, 규제부처는 조건 부가를 요청시 필요성과 적정성 입증

- **(손해배상 청구권 압류금지)** 실증특례·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인적손해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 압류금지 규정 신설
*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책임보험 지급 시, 수급전용계좌 지정 및 입금 관리

- **(기타 사항)** 시행령 규정의 법률 상향 입법*,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 정비

* (상향입법) ① 건폐율·용적률 특례(용도지역 변경) 예외 사유, ② 국제협력 시책 추진, ③ 지역추진단 설치·운영 근거, ④ 특구 지정신청 보완 요구 및 반려 사유

** (미비점 보완) 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② 특구계획 수립 안내·배포, ③ 특구 지정신청 반려 사유 통보 의무 등

② 지역특화발전특구

- **(외국어 의료광고 특례)** 특화사업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해당 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향후 계획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6.6월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생략) <신설>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특화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⑤ (생략) <신설>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 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규제 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 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 구할 수 있다. ⑤ -----제4항까지에서-- ----- ----- ----- -----.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u><신설></u>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규제 자유특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 다. 1.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특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 우 반려의 취지를 신청한 비수 도권 시·도지사등과 민간기업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 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사후관리) ①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 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의 기준 ·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72조제4항에 따른 보완요 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 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⑥ -----제5항까지에서-- ----- ----- -----. 제84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 음)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정이 해제 되었거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성 과관리 및 ----- ----- -----.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 ③ (생략)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 ----- -----있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⑧ 중소기업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 ----- ----- -----제7항을-----.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절차 및 재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0항까지에서----- ----- ----- -----.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④ -----

제86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되면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신속한 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제10항에----- ----- ----- ----- ----- ----- ----- ----- ----- ----- -----.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86조제4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⑩ -----제10항에도----- ----- ----- ----- ----- ----- ----- -----.
⑪ ~ ⑭ (생 략)	⑪ ~ ⑭ (현행과 같음)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시·도지사등은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 ----- ----- -----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86조제10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5. (생략)

② ~ ④ (생략)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⑤ (생략)

⑥ 중소기업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후단 신설>

<신설>

⑦ · ⑧ (생략)

⑨ 중소기업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⑩ (생략)

⑪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3. 제86조제11항에-----

4.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이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6항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 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⑩ -----제9항에-----

-----제8항을-----.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⑫ -----

또는 전략산업등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전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10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⑫ · ⑬ (생략)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⑮ (생략)

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1항에-----

제11항에-----

⑬ · ⑭ (현행 제12항 및 제13항과 같음)

⑮ -----제14항에-----

⑯ (현행 제15항과 같음)

⑰ -----제16항까지에서-----

제97조의2(국제협력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

<신 설>

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2.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 3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 계좌) ①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5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신 설>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1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임직원

제141조의5(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1조의6(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제143조(과태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4. 제90조제14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제143조(과태료)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90조제15항을----- ----- ----- ----- ② (현행과 같음)